

의안번호	제 300 호
의 결 연 월 일	2008년 12월 일 (제 회)

**충청북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08년 12월 2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

## 충청북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300
----------	-----

제출연월일 : 2008년 12월 2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 제안사유

- 도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설치하는 충청북도립예술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도립예술단의 장르는 챔버오케스트라로 하고, 단원은 30명 이내, 사무국 직원은 2명 이내로 구성함(안 제2조)
- 단장, 부단장, 예술감독겸 지휘자의 직무(안 제3조)
- 예술감독겸 지휘자, 단원 및 사무직원 등의 자격과 위촉방법(안 제5조)
- 전형위원회의 구성 및 전형방법(안 제6조 및 제7조)
- 단원 등의 해촉 사유(안 제10조)
- 운영자문회 구성 및 운영(안 제11조)
- 단원 및 사무직원의 보수, 여비 등의 지급기준(안 제14조)

□ 의안전문 : 불임

□ 조 례 안 : 불임

□ 관련법령 발체 : 불임

충청북도조례 제 호

## 충청북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설치하는 충청북도립예술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충청북도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단장은 문화관광환경국장이 된다.

② 예술단에는 충북도립챔버오케스트라와 사무국을 둔다.

③ 충북도립챔버오케스트라의 구성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30명 이내, 사무국 직원은 2명 이내로 구성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예술단을 대표하며,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통할하고 단원과 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예술감독겸 지휘자(이하 “예술감독”이라 한다)는 공연기획, 공연지휘, 협연자 선정 등 공연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4조(단원의 구분) ① 단원은 예술감독, 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상임단원은 예술단의 일원으로서 공연에 출연하는 상시근무자를 말한다.

③ 비상임단원은 제2항 이외의 자를 말한다.

제5조(자격과 위촉) ① 예술감독은 음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지휘력을 갖춘 자 중 예술감독 선정심의회(이하 “선정심의회”)의

라 한다)에서 적격심의를 거쳐 2명을 도지사에게 추천하여 그 중 1명을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선정심의회는 제6조의 전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③ 상임단원은 음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량을 갖춘 자 중 공개전형을 거쳐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 비상임단원은 예술감독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사무직원은 예술분야에 식견이 풍부하고 공연기획 능력이 있는 자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6조(전형위원회) ① 상임단원의 위촉을 위한 전형과 단원의 평정을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둔다.

② 전형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해당 전형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전형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제7조(상임단원 전형방법) ① 전형은 공개로 실시하되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및 경력평정으로 하며, 면접시험은 실기시험에 합격한 단원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의한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할 수 있다.

② 공개전형 및 채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전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단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9조(위촉기간) ① 단원 및 사무직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과 사무직원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

제10조(단원 등의 해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원과 사무직원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8조에 해당하는 자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자
3. 법령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4.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 없이 다른 공연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자
5.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
6. 예술단의 활동을 거부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7. 출연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자
8.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운영자문화) ① 예술단 운영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립예술단운영자문화(이하 “운영자문화”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자문화는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하되, 당연직과 위촉직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회원은 문화관광환경국장과 예술감독으로 하며, 회장은 문화관광환경국장이 되고 부회장은 예술감독이 된다.

④ 위촉회원은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현장 예술인 또는 언론인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위촉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자문화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술단 운영의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예술단운영 기본계획
3. 단원 및 사무직원의 해촉 건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운영자문화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운영자문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 문화예술과장이 된다.

제12조(겸직금지 및 복무 등) ① 단원 및 사무직원은 단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단원의 평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단원 및 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3조(예산지원 등) ①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을 도 일반회계예산으로 충당한다.

② 도지사는 예술단으로 선정되지 않은 공연예술 분야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공연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보수 및 실비보상) ① 단원 및 사무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여비 등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전형심사에 참석하는 위원 및 운영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관람료 등) ① 예술단이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예술단의 외부공연으로 출연료를 받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 수입으로 한다.

제16조(관람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요율은 별표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면

-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또는 가족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면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5.18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면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노우대 노인
  5. 3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단체
- ② 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감면 조항에 의거 감면한다.

제17조(입장권) ① 입장권은 유료입장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과 무료입장권(이하 “초대권”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관람권은 일반권과 할인권으로 구분한다.

③ 관람권은 공연장소의 매표구에서 현장판매하거나 판매가 가능한 업소를 지정하여 위탁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 수수료율은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④ 초대권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발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 관람료 감면 구분(제16조 관련)

구 분		대 상	감면 요율 (%)
할 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면 적용을 받는 자	50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면 적용을 받는 자	50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면 적용을 받는 자	50
	노 인	노인복지법 적용 대상자 (65세 이상)	50
	단 체	3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단체	20

## 관련법령 발취

### □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신설 2002.12.30>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8. 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100분의 50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6조를 준용한다.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5.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별표 1] <신설 2002.12.3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52조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8.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100분의 50

## □ 노인복지법

제26조 (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 (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 (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07.12.13>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

시설의 종류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8. 국·공립국악원	100분의 50 이상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100분의 50

비 고

2.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 공연장의 운영자가 자체기획한 공연의 관람료에 한한다.

## □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 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개정 2008.2.29>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7조 관련)

시설의 종류	감 면 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4. 국공립 공연장	100분의 50

비 고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